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근로복지정책의 목적에 근로자의 건강 보호 추가 등 >
■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6506호

2024.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2024년 2월 8일 신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3년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는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 건강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은 물론 근로복지정책과도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 고려사항에 해당될 것임. 이에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9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복지정책의 목적에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추가하고 (안 제3조제1항),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임(안 제9조제2항제3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u>삶의 질 향상</u> 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 ----- ----- ----- ----- <u>삶의 질 향상과 건강 보호</u> 를-----.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의 <u>생활안정</u> 에 관한 사항	2. ----- <u>생활안정과 재산형성</u> -----
3. <u>근로자의 재산형성</u> 에 관한 사항	3. <u>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u> 에

항	관한 사항
4. ~ 11. (생략)	4. ~ 11.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¹⁾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 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²⁾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복지시설 지원,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관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³⁾

현행법상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①근로복지정책의 목적을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②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성별, 나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도록 하고

1)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계부처 합동(2017), 「제4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2017~2021)」, p. 2.

있으며, ③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우대하도록 규정함.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위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⁵⁾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는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재산형성, 우리사주제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 등 근로복지정책의 주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함.⁶⁾

-
- 4)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6.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0.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복지정책의 범위에서 배제되고 있어⁷⁾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⁸⁾은 근로복지정책의 내용으로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⁹⁾ 근로조건으로서의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근로복지정책의 목표에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근로자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근로복지정책’에 포함시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된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임.

11.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8)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개정안의 제안이유

…현행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는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다만,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¹⁰⁾ 각종 유해·위험 방지조치(제34조~제57조),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제104조~제124조),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근로자 보건관리(제125조~제141조)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바,

근로조건으로서의 근로자 건강 보호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한편,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안정자금으로서의 의료비 용자, 근로자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지출 근거 등¹¹⁾을 규정하고 있어 생계·의료 복지의 측면에서 근로자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①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현행 법상 근로복지의 범위에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에 근로자의 건강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용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2.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
 ②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법의 하위 규정인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지침」(고용노동부고시)에서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
 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¹²⁾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
 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게 적용한다.

제4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
2.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목표 설정
3. 사업장 내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4. 직무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내용
5.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
6. 건강증진활동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계획의 재검토
7. 그 밖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조치

제8조(정부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집행·조정 / 2. 교육·홍보 / 3.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4.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 5.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지도·감독
6.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 7.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지원사업을 시
 행하게 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540